필수농자재 지원법안 (이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22

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이개호·어기구·위성곤

조인철 · 김병기 · 전재수

서삼석 • 박지혜 • 이언주

차규근 · 김현정 · 박수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업은 식량안보의 첨병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수 산업이나 급격한 기후변화, 글로벌 경쟁과 FTA, 매년 반복되는 가격폭락으로 인해 그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실정임.

특히 농산물 가격폭락사태가 매년 반복되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농업에 필수적인 비료 및 농약등 기자재 가격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중 농민이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22년 기준 948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임.

실제로 지난 10년간 농업경영비 증가추이를 보면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, 농약, 사료, 인건비 부분에서 40~70%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는 기상이변,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불안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농업소득의 변동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.

이에 따라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필수적인 필수농자재에 대한 국가적 지원 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. 특히 필수농자재로 분류된 물 품가격이 폭등할 경우 농가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 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하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필수농자재 지원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하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농업인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.
 - 2. "필수농자재"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서 비료, 퇴비, 농업용 유류, 비닐, 농약, 사료와 제7조에 따른 필수농 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품목 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경우 농가경영안 정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한다.

- 제4조(농업인의 책무) 농업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농업인의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6조(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농업인은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농업인에게 알려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필수농자재의 품목, 지원액 등은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 - ⑤ 그 밖에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및 신청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)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(이 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다.

- 제8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필수농자재 지원 품목에 관한 사항
 - 2. 필수농자재의 지원액 및 지원한도
 - 3.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
- 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- 1.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및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각 1명
 - 2.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대표 7명
 - 3. 농협중앙회 소속 임직원 1명
 - 4. 농업 관련 학계 3명
 - 5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명
 -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실태조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점검 및 환수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에게 필수농자 재를 지원하는 경우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야 한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수할 수 있다.
- 제12조(중복지원 제한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.
- 제13조(권한의 위임)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